

482-110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31 (전화) 070-7797-2583 (문의) news.pcis@daum.net
 대표 손영준 <http://cafe.daum.net/pcis>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NGO담당기자

발 신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문 의 : 손영준 T. 010-8677-9515

작 성 일 : 2013. 08. 27(화)

제 목 : [보도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태조사 (총 5페이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연구 성과물

창조경제 발목 잡는 현행 기술이전 제도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인 연구 성과물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년 기관별로 수천억에서 수백억의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산학연협력 연구과제로도 수천억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은 2013년 6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의 최근 5년간의 기술이전 정보를 분석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의외의 실태를 보고 연구 활동을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문제점

- 현행 국가 재정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성과물 1,352건 중 1,038건(77%)이 단 1곳의 기업에만 기술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수의 기업이 기술을 이전 받아 신제품의 개발하고 싶어도 과도한 초기 이전비용(수천~수억)의 부담으로 기술이전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 국가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제품 법칙을 개발하여 1명의 농부에게만 신제품 법칙을 보급하여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자금 부담이 적은 SW분야의 기술이 전체 성과물 1,352건 중 348건(26%)이 민간에 활발히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기술이전 제도의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제정이 투입된 SW성과물에 대하여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라이선스를 채택하여 민간에서 자유롭게 응용 및 성능을 개선하여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현 기술이전 정책은 초기에 과도한 기술이전비용을 청구하는 정책이 과연 SW산업의 육성 및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 일부 연구자들은 사업성에 비전이 있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자 본인이 직접 해당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여 하루아침에 연구자에서 기업가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타 연구를 수행하는 다수의 연구자에게는 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의욕의 상실로 이어지며, 이는 연구자 본연의 책무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며, 일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참여자의 무단도용에 관행 또한 시정되어야 합니다.
- 국가 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미비로 성과물의 이해 및 투입예산, 기술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관리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 및 연구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5. 개선 방향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한 성과물의 기술이전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개방, 공유, 확산의 개념으로 기술이전 정책의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 국가 재정 및 연구재원의 재투입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술료의 부과가 필요로 하다면, 현재의 선 수익 구조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매출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받는 후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필요로 합니다.
- 특히 SW부문에 있어서는 오픈소스를 원칙으로 BSD에 준하는 라이선스 정책의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 후 수익구조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연구기술이 많이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국가 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및 민간기업)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시작에서부터 기술이전 및 상용화까지 전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하여 연구수행의 투명성 및 성과물의 평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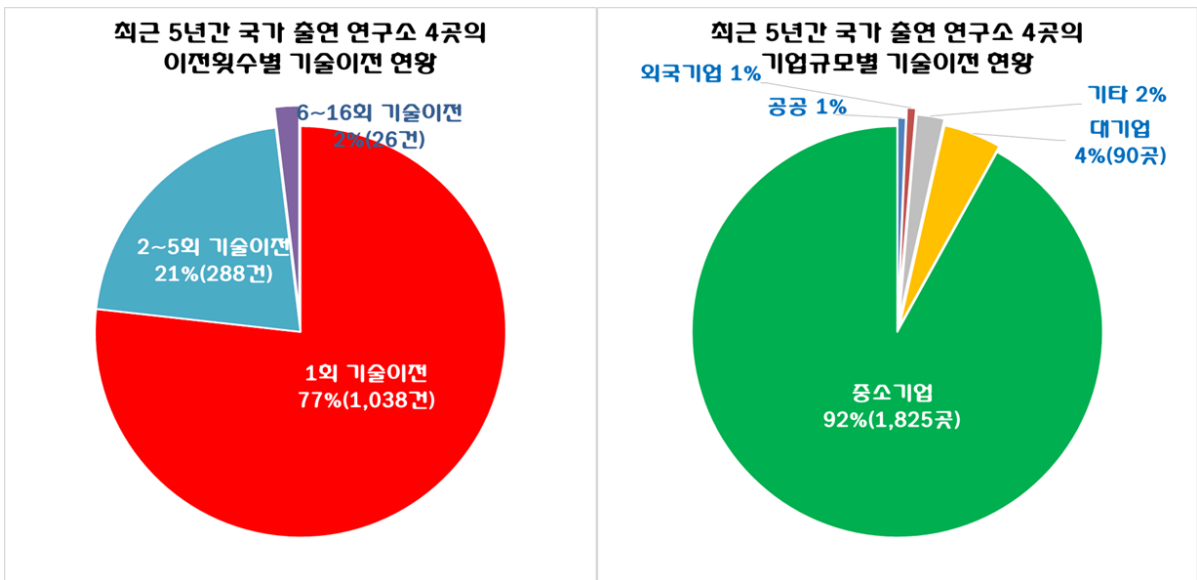
6.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의 결과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에 정부3.0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으로 땀 흘려 연구한 성과물이 국가 경제에 씨앗이 되어 국가경쟁력 및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 제도의 개선을 제언합니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에서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에서 공개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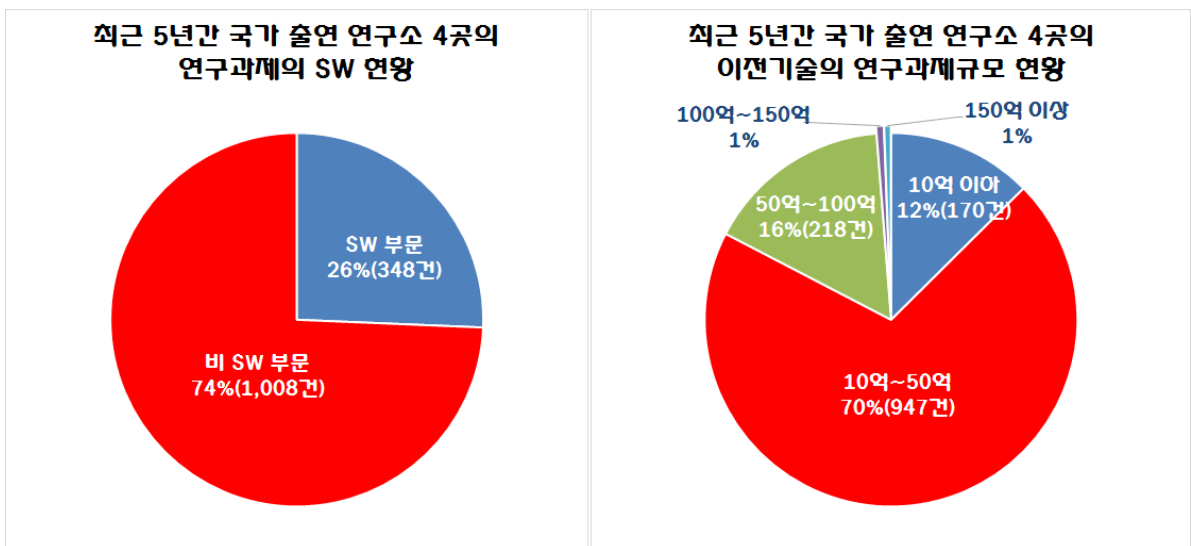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최근 5년(2008-2012)간 민간에 이전한 기술 : 1,352건
- 최근 5년(2008-2012)간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 1,985업체

나) 최근 5년간 기술을 이전한 1352건의 기술 중 단 1차례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이 전체의 77%(1,038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규모집단은 중소기업이 92%(1,825업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1.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

- 또한 이전기술의 연구과제규모는 10억~50억 규모의 과제가 전체의 70%(94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과제중 SW부문은 26%(34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 2. 연구과제의 SW 비율 및 연구과제의 예산 규모>

8. 참고 자료

◎ 관련법령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같이 적용되는 복잡한 법률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4.5.] [법률 제11719호, 2013.4.5.,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기관지원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정책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시행 2012.7.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3호, 2012.7.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면,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사용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수행결과와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5.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 중략 -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①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 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 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20조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정액기술료의 징수율) 제7조 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30
 3. 대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
- ②제1항의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3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 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실시기업은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실시 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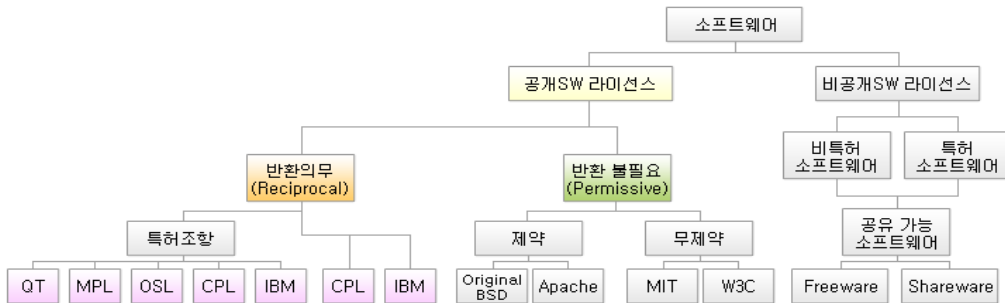
② 실시기업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2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3.75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5

③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 SW 라이선스의 종류 및 미국의 정부예산투입 성과물의 SW 라이선스 정책

○ SW 라이선스 분류



○ BSD 라이선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는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이렇게 BSD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PL 및 LGPL과 비교하여 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범위가 넓다. 이렇게 BSD 라이선스의 허용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SW에 대한 대가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SW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따라서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출처 : 오픈소스SW라이선스 가이드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2007.11)

- 끝 -